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10-1-14

규정번호 10-1-14
제정일자 2016.4.26
최근개정
개정차수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규정」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따라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규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우리대학 내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4조(보안관리 담당자) 본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 관리 담당부서는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보안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업(운영)지원팀장이 된다.

④ 보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위규자 및 신원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보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안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보안등급 분류

제6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분류절차)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등급 변경)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9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며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잠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과제담당관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결과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 참여 제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사고의 보고)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사고 처리

제16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지·장소·사고자 인적사항·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기관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보안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관련 법규 및 연구과제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